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2552
----------	------

제출일자 : 2024. 8. 23.

제출자 : 달성군수



1. 제안이유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및 관리를 민간위탁 중인 현 수탁기관의 위탁기간 만료로 인해 공개모집을 통한 재위탁 동의를 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1) 추진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운영의 위탁)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설치·운영)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운영 업무의 위탁)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2) 추진 필요성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관리가 취약한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
-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안전한 급식 환경을 위한 위생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 개발을 통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급식 위생 수준 향상

다. 위탁대상 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 설 규 모	종사자수	비 고
달성군 어린이 급식관리지원 센터	대구광역시 북구 영송로 47, 대구과학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07호	186.8m ² (사무실)	15	-

라. 수탁기관 : 대구과학대학교 산학협력단

마. 위탁대상 사무의 범위 및 내용

○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 및 50인 미만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급식소에 대한 등록 및 위생 관리 등
-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위생 및 영양관리)
-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 식단·레시피 개발 및 정보 제공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

바. 위탁기간 : 3년(2025. 1. 1. ~ 2027. 12. 31.)

사. 소요예산 및 세부항목: 연 735백만원 정도

(2024년 기준, 단위 : 천원)

구 분	계	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유형자산	인 건 비
2024년도	735,000	198,292	16,960	12,000	8,000	499,748

아. 수탁기관 선정방식

1) 접수방법 : 공개모집

2) 선정절차

- 공고 ⇨ 접수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심의 ⇨ 이의 신청·접수 ⇨ 수탁자 선정 ⇨ 협약체결

자.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별도 첨부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보고 참고)

차. 성과평가 결과

- 별도 첨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 1항에 의거 식약처 및 자체평가로 평가 같음

카. 향후일정

- 2024. 9. : 군의회 동의·의결
- 2024. 9. ~ 10.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4. 10. ~ 11. : 수탁기관 선정 심의
- 2024. 11. : 위·수탁 협약체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성과평과 결과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 보고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 설치·운영)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을 대신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연합하여 공동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
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
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
4. 그 밖에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급식소

③ 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학교급식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그 직무범위 및 그 밖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하거나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의2(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4.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14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고 또는 지방비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급식소에 대한 식재료 구매의 정보제공에 따른 시스템 구축 비용
4. 급식소의 종사자에 대한 영양 및 위생 교육 및 지도·관리에 필요한 비용
5. 급식소 이용자에 대한 영양·위생 교육 및 지도에 필요한 비용
6. 그 밖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내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식단 제공 및 식단 관리
2.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관리 지도
3. 사회복지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등 식생활 교육 및 상담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향상 및 영양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는 법인으로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⑥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와 위생 업무 담당자의 수, 자격 및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업무의 위탁)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
2. 식품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 및 위탁 업무의 내용 등을 고시해야 한다.

제3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5조제5항에 따라 보조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영양사 및 위생 업무 담당자의 급여
2.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시설의 임대료
3. 사회복지급식소의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급식 위생·영양 교육 및 지도·관리에 필요한 비용

4. 그 밖에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1. 수탁대상기관의 인력·기구 및 재정부담능력
2. 수탁대상기관의 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
3. 수탁대상기관의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지역간 균형분포 등

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제6조(민간위탁심의위원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수탁기관의 선정
2. 사무의 재위탁 또는 재계약의 적정성
3.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국장 또는 소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제5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거나 선정된 기관의 대표 및 관계 임직원인 경우는 제외한다.

1. 5급 상당 이상의 관계 공무원

2.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명

가. 의회 의원(단, 민간위탁사무와 관련된 소관 상임위원회에 소속된 의원은 배제한다)

나. 의회에서 민간위탁사무와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추천하는 사람

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의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그 외 민간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전심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민간위탁사무별로 소관 부서장이 구성하여 운영하고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⑦ 위원 구성 및 수당·여비 등의 지급,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위탁의 목적 및 사무의 내용

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3. 위탁기간

4. 수탁기관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계약 위반 시 책임에 관한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상위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참고

「달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운영 성과평가 결과

□ 평가 개요

- 평가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의2
「대구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5조1항(성과평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15조1항에 의거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성과평가 생략
- 평가기간 : 2021. 1. 1. ~ 2023. 12. 31.
- 평가대상 : 대구 달성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성과 전반
- 평가주체 : 식약처·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지자체
 - 식약처·중앙센터(전체의 1/3), 지자체(전체의 2/3)
 - 3년에 1회 이상 식약처·중앙센터의 평가를 받도록 하여 객관성 확보
- 평가방법 : 평가표에 따른 현장평가(80점)
+ 중앙센터 주관 설문조사 전문기관 위탁 만족도 평가(20점)
- 평가내용
 - 운영 관리 : 센터 시설·사업관리, 예산 운영의 적정성
인력관리 및 운영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급식소 지원 : 급식소 등록·관리, 급식 지원 확대 노력도
급식소별 순회방문지도 등 지원성과
 - 만족도 평가 : 종합만족도, 식습관 개선 효과 및 평가결과 제고 노력도

□ 평가 결과

구 분	평가기관	합 계	운영관리	급식소지원	만족도조사	결과
2021년	달성군청	92	45	32	15	적합
2022년	달성군청	96.08	45	33	18.08	적합
2023년	식약처·중앙센터	94.50	39	38	17.5	적합

▶ (적합) 80점 이상/ (미흡) 5개 필수항목 중 부적합이 하나라도 있는 경우(점수 무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결과보고

청소위생과-5564(2024. 8. 7.)호와 관련하여 적정성평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근거 :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한 조례」 제6조

□ 심의위원회 개요

- 심의일자: 2024. 8. 13.(화)
- 참여위원: 심의위원 전원(7명: 공무원 2명, 달성군의원 1명, 민간인 4명)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결과: 원안가결

심의 안건	심의 결과	비고
대구광역시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	원안 가결	참여위원 전원 직정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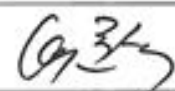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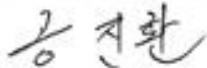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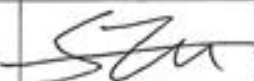

붙임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및 위원별 의결서 각 1부.

2024. 8. 13.

위 보고자 지방보건서기 박 선 미

주무관	주무관	청소위생과장	결 지
박선미	신해인	전결 2024. 8. 13. 나호영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의결서

안 건 명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일시	2024. 8. 12.(월)~ 8. 13.(화), 서면심의			
주문요지	○ 아래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을 요구함 -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			
의결내용	○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 적정성 의결			
<p>위와 같이 의결한다</p> <p>2024년 8월 13 일</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p>				
구 분	직 책	성 명	의견(가·부)	서 명
위원장	부 군 수	배춘식	가	
위 원	주민복지국장	공진환	가	
위 원	달 성 군 의 원	신동윤	가	
위 원	영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방우석	가	
위 원	계명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최미자	가	최미자
위 원	현대엠코아이마루 어린이집 원장	노혜정	가	노혜정
위 원	꿈이있는 어린이집 원장	이주영	가	이주영


심의의결서

안 전 명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의결	○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u>적정한</u> 것으로 심의의결한다.
기타의견	○ ○
<p>위와 같이 의결한다</p> <p>2024년 8월 13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width: 30%;"> <p>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p> </div> <div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p>배춘석</p> </div> <div style="width: 30%; text-align: center;"> <p>(서명)</p> </div> </div>	


심의의결서

안 건 명	<p>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 적정성</p>
심의의결	<p>○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u>적정한</u> 것으로 심의의결한다.</p>
기타의견	<p>○ ○</p>
<p>위와 같이 의결한다</p> <p>2024년 8월 13일</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공 전 환  (서명)</p>	

심의의결서

안 건 명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의결	○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u>적정한</u> 것으로 심의의결한다.
기타의견	○ ○
<p>위와 같이 의결한다</p> <p>2024년 8월 13 일</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between; align-items: flex-start;"> <div style="text-align: left;"> <p>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p> </div> <div style="text-align: right;">  <p>(서명)</p> </div> </div>	

심의의결서

안 건 명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의결	○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u>적정한</u> 것으로 심의의결한다.
기타의견	○ ○
<p>위와 같이 의결한다</p> <p>2024년 8월 13 일</p> <p>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center; align-items: center; gap: 20px;"> 1880 우석 (서명)  </div>	

심의의결서

안 건 명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의결	○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u>적정한</u> 것으로 심의의결한다.
기타의견	○ ○
<p>위와 같이 의결한다</p> <p>2024년 8월 13 일</p>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최 피 자 (서명)

심의의결서

안 건 명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의결	○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u>적정한</u> 것으로 심의의결한다.
기타의견	○ ○
<p>위와 같이 의결한다</p> <p>2024년 8월 13일</p> <p> 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 </p> <p style="margin-left: 200px;"> 노혜정 (서명) </p>	

심의의결서

안건명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의결	○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의 민간위탁 계획 및 민간위탁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u>적정한 것으로 심의의결한다.</u>
기타의견	○ ○
<p>위와 같이 의결한다</p> <p>2024년 8월 13 일</p> <p>대구광역시 달성군 민간위탁심의위원회</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61 3000 (서명) </div>	

민간위탁 적정성 사전 검토서

1 기본 검토사항

대상 사무	○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민간위탁 추진 목적	○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급식관리가 취약한 어린이·사회복지 시설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영양관리 지원 ○ 어린이·사회복지시설 급식소의 안전한 급식 환경을 위한 위생 관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자료 개발을 통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대상자의 급식 위생 수준 향상															
위탁 근거	○ 법적 근거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 -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 2024년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통합 가이드라인 (식약처)															
위탁 내용	○ 추진현황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위탁기간</th> <th>수탁기관</th> <th>선정방법</th> </tr> </thead> <tbody> <tr> <td>2013.9.1.~2015.12.31.</td> <td>대구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td> <td>공모</td> </tr> <tr> <td>2016.1.1.~2018.12.31.</td> <td>대구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td> <td>재계약</td> </tr> <tr> <td>2019.1.1.~2021.12.31.</td> <td>대구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td> <td>재계약</td> </tr> <tr> <td>2022.1.1.~2024.12.31.</td> <td>대구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td> <td>재계약</td> </tr> </tbody> </table> ○ 위탁기간: 3년(2025. 1. 1 ~ 2027. 12. 31.) ○ 위탁내용 : 달성군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인 미만 어린이급식시설 및 50인 미만 영양사가 근무하지 않는 사회복지시설급식소에 대한 등록 및 위생 관리 등 •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위생 및 영양관리) • 급식시설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 • 식단·레시피 개발 및 정보 제공 •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2013.9.1.~2015.12.31.	대구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공모	2016.1.1.~2018.12.31.	대구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재계약	2019.1.1.~2021.12.31.	대구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재계약	2022.1.1.~2024.12.31.	대구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재계약
위탁기간	수탁기관	선정방법														
2013.9.1.~2015.12.31.	대구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공모														
2016.1.1.~2018.12.31.	대구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재계약														
2019.1.1.~2021.12.31.	대구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재계약														
2022.1.1.~2024.12.31.	대구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재계약														

<p>위탁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추가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지원 추가 - 국정과제 68-2 [모두가 건강한 식생활관리체계 구축]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따라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위생·영양관리를 위해 2026년까지 모든 시·군·구에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하도록 함.
<p>적정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에 대한 영양과 위생·안전관리 지원이 주된 사무로 사무·관리의 성격상 관련 자격(영양사, 위생사 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하는 것이 타당함.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균형 잡힌 영양관리와 지역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의 대상별 맞춤형 급식 위생·안전 및 영양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보 -관련 법령 및 가이드 라인에 준한 운영으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업무 추진이 필요. ○ 경제적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문인력의 관련 업무 수행 경험 및 교육자료·기타 부대시설의 활용 등으로 관련 업무의 연속성 증대와 경제적 효율성 증대로 효율적인 사업 운영.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련 자격기준을 갖춘 전문인력을 채용하며, 관련 전문 지식을 활용한 사업 수행으로 관련 사무의 전문성 확보. ○ 성과 측정의 용이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식약처장이 매년 평가기준(급식소 만족도 등)을 정하여 평가 실시함.

<p>적 정 성 토 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 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식약처장 및 지자체장이 지역센터 급식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투명성 확보. ○ 민간 서비스의 공급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구시 9개 구·군에서 민간에 위탁하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중임. - 총 10개소(8개 구·군 각 1개소, 북구 2개소) 												
<p>기 존 수 탁 기 관 및 선 정 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방법 : 재계약 ○ 수탁기관명 : 대구과학대학교산학협력단 ○ 수탁기간 : 2022. 1. 1. ~ 2024. 12. 31.(3년간) ○ 위탁금 : 735,000천원(국비 50%, 시비25%, 군비25%) 												
<p>수 탁 기 관 선 정 방 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선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 ⇨ 접수 ⇨ 심의위원회 구성 ⇨ 심의위원회 심의 ⇨ 이의 신청·접수 ⇨ 수탁자 선정 ⇨ 협약체결 												
<p>민 간 위 탁 금 *예산지원형 위탁시 기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 사업예산 <table border="1" data-bbox="400 1525 1425 1776"> <thead> <tr> <th>연도별</th> <th>민간위탁금(천원)</th> <th>세부 산출내역</th> </tr> </thead> <tbody> <tr> <td>2022년</td> <td>735,000</td> <td>사업 규모별 관리 급식소수(220개소 이상)</td> </tr> <tr> <td>2023년</td> <td>735,000</td> <td>사업 규모별 관리 급식소수(220개소 이상)</td> </tr> <tr> <td>2024년</td> <td>735,000</td> <td>사업 규모별 관리 급식소수(220개소 이상)</td> </tr> </tbody> </table>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2년	735,000	사업 규모별 관리 급식소수(220개소 이상)	2023년	735,000	사업 규모별 관리 급식소수(220개소 이상)	2024년	735,000	사업 규모별 관리 급식소수(220개소 이상)
연도별	민간위탁금(천원)	세부 산출내역											
2022년	735,000	사업 규모별 관리 급식소수(220개소 이상)											
2023년	735,000	사업 규모별 관리 급식소수(220개소 이상)											
2024년	735,000	사업 규모별 관리 급식소수(220개소 이상)											

<p>사 용 료 *수익창출형 위탁시 기재</p>	<p>○ 해당없음</p>
<p>기대효과 및 향 후 계 획</p>	<p>○ 어린이의 올바른 식생활 습관 형성과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도록 관리 지원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에 기여 ○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단체급식의 관리 지원으로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영양을 증진시켜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도모</p>
<p>전 문 가 의 견</p>	<p>○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민간위탁이 적정함을 의결함</p>